
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4의3] <신설 2024. 12. 30.>
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(제30조제1항제9호
관련)

바나나(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3.90.0000호)

이행연도	1년차	2년차	3년차	4년차	5년차	6년차
기준발동물량 (메트릭톤)	322,687	325,687	328,687	331,687	334,687	337,687
특별긴급관세율(%)	30	30	30	30	30	27
이행연도	7년차	8년차	9년차	10년차	11년차	
기준발동물량 (메트릭톤)	340,687	343,687	346,687	349,687	해당없음	
특별긴급관세율(%)	24	21	18	15	0	